

## ●동해어업관리단공고 제2023-29호

「어선법」 제31조의2(어선중개업 등록 등)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어선중개업 행정처분(영업정지 1개월)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3년 06월 27일

동해어업관리단장

### 어선중개업 행정처분 통보 공고

※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처분 제목	「어선법」 위반 어선중개업 1차 행정처분(영업정지 1개월)					
당사자	성명(상호)	김*성(디에스마린)				
	주소	부산 강서구 유통단지1로 50, 이하생략 *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개략적 주소 기재				
처분 이유	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(보증보험 미가입)					
처분 내용	영업정지 1개월(2023. 6. 13 ~ 2023. 7. 12)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어선법」 제31조의2,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					
처분 기관	기관명	동해어업 관리단	부서명	어업 지도과	담당자	김문정
	주소	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638, 동해어업관리단			전화	051-410-1091
	메일	answjd1227@korea.kr			팩스	051-410-1046

#### <유의사항>

-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행정소송법에 따라 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분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, 온라인 행정심판([www.simpan.go.kr](http://www.simpan.go.kr))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어선법」 제31조의6(과징금 처분)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